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04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박범계 • 박지원 • 추미애

김승원 · 정준호 · 김남근

신정훈 • 이정문 • 정을호

정성호 · 부승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군사 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이익에 반한 범죄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사유로 그 책임자 등이 압수 · 수색의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한 압수 ·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0조 및 제111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 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 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 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 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수·수색영장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 및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부되는 압수·수색영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110條(軍事上 秘密과 押收) ①軍事上 秘密을 要하는 場所는그 責任者의 承諾 없이는 押收또는 搜索할 수 없다.

② 前項의 責任者는 國家의 重 大한 利益을 害하는 境遇를 除 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 한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公務所가 職務上의 秘密에 關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官 公署의 承諾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② 所屬公務所 또는 當該 監督 官公署는 國家의 重大한 利益 을 害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承諾을 拒否하지 못한다.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 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승낙을 거부한 경우에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출석하여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사유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써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